

영등포구의회
제210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자원에 관한
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이미자의원 대표발의】



2018. 10. 22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7호로 2018년 10월 12일 이미자 의원 외 7명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8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“외국인 자율방범대”에 대한 구성 및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과 지역사회의 원활한 치안 유지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에서 “외국인 자율방범대”에 대한 사항 신설
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명칭, 조직, 임무 규정 신설
(안 제3조~제5조)
- 다. 외국인 자율방범대 경비 지원 근거 신설(안 제8조)
- 라. 자율방범연합대 및 포상 대상에 외국인 자율방범대 포함
(안 제9조, 제12조)

4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 질서유지에 관심이 많은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주민들이 자율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보호와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‘외국인 자율방범대’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 -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“외국인 자율방범대”에 대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,
 -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명칭, 조직, 임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8조에서는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 - 안 제9조와 제12조에서는 자율방범연합대 및 포상 대상에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포함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음
- 검토 결과, 본 조례 안은 대림2동을 중심으로 운영중인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대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, 우리구의 체류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서,

이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성숙하고 책임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, 또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.